##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71 발의연월일: 2025. 4. 9.

발 의 자: 강선우·김한규·김교흥

강훈식 · 김윤덕 · 서미화

장종태 · 정동영 · 김성회

박지원 · 김준혁 · 김 윤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노쇠,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·돌봄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.

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소화흡수력 약화, 활동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,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도 떨어져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음.

이에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중 하나로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8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415호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415호 의료・요양 등	법률 제20415호 의료・요양 등		
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	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		
법률	법률		
제15조(보건의료) 국가와 지방자	제15조(보건의료)		
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			
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			
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			
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			
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			
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8.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		
	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		
	<u>서비스</u>		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		